

### 3. 2012년도 달라지는 주요 예산제도

#### □ 예산 성과관리 및 건전 예산편성 기반마련

##### ○ 전 자치단체 '12년도 성과예산서 편성

- '08년부터 본격 도입·시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제도가 정착되었으며, 본 제도의 도입목적인 예산의 성과관리 추진필요
- 기반조성 단계(~'10) → 본격확산 단계('11~'13) → 성숙단계('14~)
  - '12년 전 광역단체 성과예산서 작성(기초자치단체는 시범 편성)
  - '11년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('12.6월) : 도 및 선도 기초자치단체(춘천,영월)

##### ○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

- 자치단체도 '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(性認知) 예산·결산서를 작성하고, 이를 예산안·결산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('11.3.8, 지방재정법 개정·공포)
- '12년 예산서 작성시 전 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

##### ○ 자치단체 재단 등 예산출연 관리 강화

- 출연금(306) 편성목 설정에 장학재단에 예산을 출연할 때에는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, 지자체의 지도·감독, 당연직 이사 선임, 이사장의 임면,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

##### ○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목적외 사용금지

- 운수업계 유가보조금(307-09) 집행잔액 발생시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연도의 유가보조금 안분에 반영토록 개정 반영
  - ※ '01년부터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운수업계에 보조

#### □ 기준경비 관리강화 및 운영 효율화

##### ○ 민간자본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강화

- 민간자본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과평가 및 3년 일몰제 실시 의무화
-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교리 전파가 목적이 아닌 순수한 문화·복지사업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
  - ※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련법률에 의해 현행대로 지원 금지

### ○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 명확화

- 국내 교육훈련기관 파견자에게 지급토록하고 있는 특정업무경비 규정 삭제
- 특정업무경비 간소화 등을 위해 공통필수항목의 대민활동비(5만원)와 그 금액이 같은 회계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삭제

### ○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형평성 제고

-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조직편제를 감안, 사업소를 포함한 실·과단위 하부조직이 있는 4급 보조기관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결정·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

## □ 예산편제 및 과목구분 보완

### ○ “잡수입” 세입과목 명칭 개선

- “잡수입”을 “기타수입”으로, “기타 잡수입”을 “그외수입”으로 명칭 변경

### ○ 공무원 교육여비 과목 신설

- 공무원 교육여비(202-05) 통계목을 신설하여 위탁 교육훈련경비를 명확하게 하고 효율적인 통계관리

### ○ 공무원 대여학자금 편성목 조정

- 민간위탁금(307-05)을 전출금(309-03)으로 통계목 조정

## □ 사업예산 운영기준 개선

### ○ 시설비 및 부대비의 전용제한 규정 명확화

- 시설비 및 부대비(401)는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간 전용 불가. 다만 동일한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

### ○ 지방예산 운용에 관한 지도감독 절차 마련

- 지방예산 운용관련 질의·답변 절차 마련(문서, 국민신문고 등)
  - 자치단체 각 부서 → 해당 자치단체 예산부서 → 상급기관 예산부서(질의·답변)
- ※ 지방자치단체 예산관련 상급기관 질의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질의 원칙